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2. 3(수)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9. 12. 23

나. 제 안 자 : 이은석·성용기·강문기·박승희·김소림 의원 외 4인

다. 회부일자 : 2009. 12. 23

라. 상정일자 : 2010. 2. 1(제180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이은석 의원

○ 검토보고: 건설교통전문위원 김동호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불법 적치물 존치, 교통안전시설의 미비 및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하여 등·하교 시 크고 작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교통안전 지도에 대한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 사고 방지를 위한 시책 강구, 시민 협조 등 관계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 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항 등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안 제6조).
- 시장은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 등·하교 시에 교통안전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 제정안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유치원, 초 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등에서 등하교길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경 우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의하여 필요한 경 비를 지원토록 규정하는 내용임.
- 주요 내용은 어린 학생들의 등하교길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 구역의 관리방향을 수립하여 법정계획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과 지역 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토록하며 통학안전을 위한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고 행정기관과 시민이

협력하는 중요정책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례 제정(안)이 발의된 것은 교통안전 정책에 있어 보다 발전되고 미시적인 정책이라고 판단되나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령과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본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타당성과 실익(實益)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건설교통위원들의 공동 발의사항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질의 답변은 생략하였음.

5. 토론요지

가. 찬성 : 문희출, 강문기, 노경수, 허식, 박승희, 성용기, 이재호, 이은석 위원나. 반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전원찬성 : 8명)

8. 기타 특이사항

○ 없음

붙임 :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교 등의 등·하교 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 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및 「영유 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다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한다)을 말한다.
- 제3조(관계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 2.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계획
 - 3.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교통규제에 관한 사항

- 4.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 5.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6.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재원 확보계획
- 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시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하 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의 통학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길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 의한다.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